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운용하기로 확인

■ 현 시점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권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3일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에 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하여 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